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주체111(202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5호로 채택

주체112(2023)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의 기본

제1조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속질서 위 반행위 방지 법은 합의, 허가, 경유 등 수속사업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와 사회,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의 기본원칙)

수속사업을 정규화, 규범 화하는것은 국가의 정책 집행에서 신속성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활동과 인민들의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각종 합의와 허가, 경유 등 해당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기 위한 정연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는 혁명규률을 확립 하도록 한다.

제3조 (수속질서위반행위와의 균등적투쟁원칙)

수속질서를 어기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수속질서를 어기는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전사회적,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4조 (수속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수속질서를 어기고 국가의 정책관철에 지장을 주었거나 리기적목적에 도용한자에 대하여는 그가 누구이든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5조 (해당 법규의 적용)

수속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경제관리에서의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제6조 (경제관리에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의 기본요구)

경제관리에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고 사업능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하고 복잡한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바로잡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속과 관련한 지도적문건의 작성 및 시달)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문건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과 관련한 규정, 세칙, 지도서를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절차와 공정, 기간 같은것을 신속성을 보장하고 간소화하는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서 내보내는 문건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과 관련한 세칙, 지도서는 내각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그것을 어겨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다른 단위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수속질서제정과 관련한 도인민위원회의 임무)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에서 내려보낸 문건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과 관련한 규정, 세칙, 지도서에 준하여 해당 지역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련한 수속절차와 공정, 기간 같은것을 신속성을 보장하고 간소화하는 원칙에서 준칙으로 정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과 관련한 준칙은 내각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제9조 (새 기술도입 및 새 제품개발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과학기술행정 지도관리 기관과 중앙품질 감독지도기관, 중앙가격 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새 기술도입, 새 제품개발과 관련한 신청문건이 제기되면 품질인증, 제품생산허가, 규격승인, 가격승인 등 반드시 필요한 수속절차만을 거치도록 간소화하며 불필요한 제한조건들을 없애 여 최단기간내에 도입, 개발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위주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을 만들어놓아 새 기술, 새 제품이 제때에 도입, 개발될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로력수급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 여러부문에 필요한 로력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력수급사업과 관련한 수속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돈과 물건을 받고 로력조절배치의뢰서, 로력파견장, 로력동원장 등을 망탕 발급하면서 로력관리사업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 (설비, 자재, 자금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공업, 농업, 수산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의 물질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신청과 관련한 수속질서를 바로 세우고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어 기업체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와 자재, 자금신청과 관련한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만들어놓거나 해당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상업봉사승인질서 위반행위 방지)

상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상업봉사단위들의 품질허가, 영업허가 등 봉사활동과 관련한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시행하여야 한다.

돈과 물건을 받고 상업봉사를 승인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농업생산과 경영활동, 농업건설에서의 수속질서 위반행위 방지)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장의 기구조절과 작업반 및 분조조직, 농업건설 대상설계심의를 비롯한 농업생산과 경영활동, 농업건설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들을 만들어놓아 농업생산과 경영활동, 농업건설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수산자원리용승인질서 위반행위 방지)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해사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어장이 조성되는데 맞게 물고기를 집중

적으로 많이 잡을수 있도록 고기배들의 바다출입수속과 어장분할, 어업허가 등 수산자원리 용 승인질서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돈과 물건을 받고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고기배들의 바다출입을 승인해주거나 이 구실, 저 구실 대며 제때 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수산정 책관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5조 (부업단위 기구승인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의 후방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양식기지, 피복가공기지, 식료가공기지 같은 부업단위 기구승인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아 자체의 후방토대를 마련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 (정 보산업 제 품생 산과 봉사활동에 서 의 수속질 서 위 반행 위 방지)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정보산업제품생산과 봉사활동에서의 수속 절차와 승인질서를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무질서한 수속절차로 정보산업제품생산과 봉사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17조 (의료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 료품규격심 의와 의료품생산허 가, 약국허 가를 비롯한 의 료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의료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아 국가의 보건정책관 철 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업미술도안의 심의와 도입, 리용과 관련한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시행하여야 한다.

부당한 리유와 구실로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 (수출입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대 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무역단위들을 활성화하는 원칙 에 서 가격승인, 반출입승인 등 수출입과 관련한 수속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반드시 경유해 야 할

지표들은 계획화단계와 세관수속단계에서 하게 하여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수속절차로 나라의 무역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 (합영, 합작에서의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업체들이 합영, 합작권을 원만히 행사하고 대외거래에서 신용과 시기성을 보장할수 있게 합의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으로 기업체들의 합영, 합작권행사에 지장을 주거나 대외거래에서 신용과 시기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국토개발승인질서 위반행위 방지)

중앙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과 국가건설 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적극 다그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건설명시, 건설허가, 토지리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같은 수속절차를 간소화하며 제기된 신청문건들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돈과 물건을 받고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해주거나 이 구실, 저 구실대며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 (종합적인 수속 및 승인업무)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중앙과 도, 시, 군의 편리한 장소에서 수속과 승인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우고 장악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신속성을 보장하며 뇌물행위를 비롯한 위법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자수속체계의 확대도입)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기업체들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수속을 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진행하도록 강한 규률을 세우며 전자수속경유단위들사이의 정보적연계를 강화하고 수속업무의 지능화범위를 넓혀 국가공무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전반에서의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제24조 (사회전반에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의 기본요구)

사회전반에서 수속질서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수속사업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 퇴물 행위를 비롯한 위법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신분등록질서위반행위방지)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리 (읍, 로동자구, 동) 사무소, 해당 기관은 거주, 퇴거, 결혼, 리혼, 립양, 파양 등 주민들의 신분등록과 관련한 신청문건을 제때에 승인, 경유해주기 위한 사업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일군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신분등록을 해주면서 돈과 물건을 받거나 세외부담을 시켜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화약류와 독성물질, 열 및 내압설비취급허가질서위반행위방지)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약류와 독성물질, 열 및 내압설비취급과 관련한 허가질서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화약류, 독성물질, 열 및 내압설비취급과 관련한 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살림 집 리 용허 가질서 위 반행 위 방 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 집 리 용과 동거살림허가와 관련한 신청문건이 제기되면 인민성의 원칙에서 제때에 정확히 검토하고 살림집리용허가증을 공정하게 발급하여야 한다.

돈과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조건을 걸고 살림집리용과 동거살림허가를 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입원 및 퇴원, 료양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보건일군은 입원, 퇴원, 료양과 관련한 수속절차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시행하여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입원, 퇴원, 료양수속을 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전자설비 등록 및 전자증명서 수속질서 위 반행 위 방 지)

전파감독기관과 전자인증기관은 컴퓨터, TV, 라디오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등록 및 기술검

사, 전자증명서발급과 관련한 신청문건이 제기되면 정해진 기일안에 정확히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등록증서와 전파보증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인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유선전화설치, 이동통신등록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선전화설치, 이동통신등록신청과 관련한 경유사업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유선전화설치와 이동통신등록신청문에 경유를 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 (차등록 및 운전자격증발급질서위반행위방지)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차등록 및 차운전면허증발급에서 정해진 절차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차등록 및 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검사, 검역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세관을 비롯한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과 운수수단, 공민의 휴대품 등의 통관과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해주어 통관속도를 높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검사, 검역수속을 해주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키거나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영예군인, 제대군관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지방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영예군인, 제대군관우대정책의 요구에 맞게 그들의 사업조건, 생활조건과 관련한 모든 수속을 우선적으로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영예군인과 제대군관, 그 가족의 사업조건, 생활조건과 관련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그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사회보장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수속과 관련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때에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사회보장수속을 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5조 (문화분야의 수속사업에서 지켜야 할 요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 관과 중앙교육지도 기관, 중앙보건지도 기관, 중앙체육지도 기 관, 중앙출판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 교육, 보건, 체육, 출판, 인쇄 등 문화 분 야의 모든 수속절차와 제 한조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립 장에서 바로잡기 위 한 실 무적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엄 격히 준수하는 혁명적 인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본위주의와 리 기심과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젖 어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만들어놓거 나 제때 에 해 주지 않아 문화분야의 발전을 억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중재, 재판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

중재, 재판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중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속을 정해진 기일안 에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중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속을 해주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 아 기 업체들의 활동과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직권을 리용한 수속질서위반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은 직권을 리용하여 수속질서위반행위를 묵인, 조장시키거나 응 당 해주어야 할 수속을 해주면서 돈과 물자를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정책관철과 공무집행 , 사 회 경제활동과 인민들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현상을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며 통 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수속질서 위 반행 위 방지 사 업 에 대 한 지 도는 내 각과 성 , 중앙기 관, 지 방인민위 원회 가 한 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각종 수속절차와 승인질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 화, 대책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속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법교양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일군들속에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와 관련한 준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퇴물행위를 비롯한 위법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수속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감독통제)

수속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속사업에서 국가의 정책관철과 공무 집행, 사회경제활동과 인민들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속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속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3조 (수속 질 서 위 반 행 위 에 대 한 조 사 처 리)

검찰, 사회 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속질서를 어 기는 행위를 적발하였거나 수속질서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묵과하지 말고 제때에 조사하며 대상에 따라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제기하여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4조 (벌금, 몰수처벌)

다음의 경우에 건당 기관, 기 업소, 단체 에는 100만~150만원, 책 임있는 일군 에 게는 5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에 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을 해주지 않아 정책 집행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2. 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절차와 공정, 기간 같은것을 정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수속사업을 하였을 경우
3. 돈과 물건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합의, 승인 및 허가, 경유 등 수속을 해주면서 돈과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 한다.

제45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 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합의와 승인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정책관철과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자기 지역의 자원을 독점물처럼 여기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단위들의 합의, 경유 등에 제동을 걸고 세외부담을 주었거나 돈과 물건을 받아냈을 경우
3. 본위주의를 하면서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을 만들어놓아 새 기술, 새 제품을 제때에 도입, 개발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4. 돈과 물건을 받고 로력조절배치의뢰서, 로력파견장, 로력동원장 등을 망탕 발급하면서 로력관리사업에 무질서를 조성하였을 경우
5. 설비와 자재, 자금신청과 관련한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만들어놓았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돈과 물건을 받고 상업 및 급양봉사를 승인해주었을 경우
7.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들을 만들어놓아 농업생산과 경영활동, 농업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돈과 물건을 받고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고기배들의 바다출입을 승인해주었거나 이 구실, 저 구실대며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수산정책관철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단위 기구승인과 관련한 수속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아 자체의 후방토대를 마련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무질서한 수속절차로 정보산업제품생산과 봉사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의료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수속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아 국가의 보건정책관철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부당한 리유와 구실로 산업미술도안과 관련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불필요한 수속절차로 나라의 무역활성화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불필요한 수속절차와 제한조건으로 기업체들의 합영, 합작권행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거래에서 신용과 시기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15.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해주었거나 이 구실, 저 구실 대며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국토관리정책관철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신분등록을 해주면서 돈과 물건을 받았거나 세외부담을 시켜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17. 화약류, 독성물질, 열 및 내압설비취급과 관련한 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조건을 걸고 살림집리용과 동거살림허가를 해주었을 경우
19.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입원, 퇴원, 료양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20.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전자, 전파설비등록증서와 전파보증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주었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불편을 주었을 경우
21.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유선전화설치와 이동통신등록신청문건에 경유를 해주었을 경우
22.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차등록 및 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었을 경우
23.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검사, 검역수속을 해주었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켰거나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4. 영예군인과 제대군관, 그 가족의 사업조건, 생활조건과 관련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그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을 경우
25.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사회보장수속을 해주었을 경우
26. 본위주의와 리기심과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젓어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만들어놓았거나
27. 본위주의와 리기심과 같은 낡은 사상에 물젓어 불필요한 수속절차를 만들어놓았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문화분야의 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8. 비법적으로 돈과 물건을 받고 중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속을 해주거나 제때에 해주지 않아 기업체들의 활동과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29. 직권을 리용하여 수속질서위반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퇴물을 받았거나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 동

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46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 책임을 지운다.